

제42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4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상정된 안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1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1

(14시02분 개의)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론 스케치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원쪽입니다.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용민 의원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 그리고 장경태 의원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김용민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그리고 2년 해서 1년마다 8명씩 증원을 하고, 장경태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28명, 2년 29명, 3년 29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대법관 수 확대는 대법관들의 재판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대법관 임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과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과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운영방식 등 조직의 정비와 예산 등 기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는 동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단계적 증원과 관련해서 현행 대법관 교체 시기, 인사청문회 그리고 중립성 및 다양성을 갖춘 적임자 충원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대법원 사건 처리 현황, 외국 입법례 그리고 대법관 임기 현황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상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법원 외의 고등법원에 별도의 상고를 처리하는 부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법원으로 유입되는 상고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대법원에 유입되는 상고사건의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이른바 상고제한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1980년대에 시행했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서 사실상 폐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등법원에 상고를 심사하는 부를 두는 방안은 과거 60년도에 상고부를 고등법원에 둔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심이 대법원이라는 점과 다소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가 돼서 63년도에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대법원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인데 크게 보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대법원에 대법관 판사가 아닌 다른 일반 판사를 두어서 이원적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일반 판사를 두는 방안도 1959년도에 시행은 했다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폐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도 상고심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대법관을 늘릴 것인가 그리고 늘린다면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본안사건 수가 2014년도에 보면 1심에 147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 본안사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르면 107만 건으로 본안사건 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이것과 맞물려서 대법원 상고사건 수도 2022년도에는 5만 건을 넘어갔습니다만 2023년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사건 수 자체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이 권리구제 기능 외에도 정책판단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을 때 과연 두 가지 기능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유지시킬 것인가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법관을 증원할 것인지, 증원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오늘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거 대법관 증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상고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과 함께 논의가 되었고 사법제도개혁위원회 등 법국가적 기구를 설치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과정이 없이 단기간에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상고사건 적체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원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다루는 구조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상고심사제도입 등 구조적 개편이 병행되어야 되고 하급심의 권한 강화와 충실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국가적 기구에서 이러한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던 것도 그것이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법령 해석의 통일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중대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법관 수가 대폭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원합의체 심리가 곤란해지고 3~4인으로 구성된 소부 위주로 상고심 재판이 운영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부를 구성하는 소수의 대법관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대법원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의 약화로 하급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뿐 아니라 당사자의 재판

승복률이 낮아지고 상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고 소송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대법관 대폭 증원을 정당화하지만 이는 잘못된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최고법원은 재판 구조, 상고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나라 최고법원의 재판부는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차등을 두어서 재판장과 그 외 법관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법관이 한정되며 전원합의체는 매우 예외적으로 운영됩니다. 더구나 독일의 경우 법관이 2만 명, 변호사는 16만 5000명 이상으로 법조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를 뿐만 아니라 오랜 법률 문화와 제도적 축적을 통해서 법령 해석에 일관성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두 나라는 최고법원에 다수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고 허가제 등 상고사건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법시스템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부칙은 2년 내에 16명 또는 3년 내에 86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그 이후 임명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재판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서 국가적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한 수단일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적 해법은 아닙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반드시 상고심 구조 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순서 또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확정된 이후에 대법관 수의 적정한 증원 규모의 시기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는 개정안은 상고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대법원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먼저 거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희들이 토론할 필요도 없이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길 내용들을 모두 다,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임식장 의자도 정리 다 안 했을 텐데 민주당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보다 더 급한 법안

도 있을 것이고요. 그 법안들 먼저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 되는 것들은 지금 관련 검사들을 증거 조작으로 고발해서 유무죄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지금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임명해서 결론을 어떻게든 바꿔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단계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4심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오늘 이 3단계로써 추진되는 것입니다. 1·2단계 이미 추진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단순히 세 번 재판받기, 삼세판으로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심급이 올라갈수록 신중한 재판 그리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결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1·2·3심 올라갈 때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재판도 아니고 그저 심급만 높아지는 재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증원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많은 숫자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조직화되어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데 결국은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정권이 바뀐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나라의 기초를 닦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취임식 첫날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법안에 직접, 만약에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이라면 혜택을 받게 될 대법원에서 저런 정도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면 저는 그냥 저것을 방송에 들고 나가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이거라고 그대로 읽으면 국민들께서 정말 충분히 잘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법안은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법안들은 통과시키시되, 그것은 한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공청회는 한번 하시고 의견을 들어 보시고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 민주당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행정처 차장님, 법률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소문으로 듣고 있지만 지난번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 재판이 있었을 때 대법원 관계자들도 스스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취지의 언급들이 나온 적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박균택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로도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해 주는 보고서에 의존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많이 믿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 일반 사건은 아예 보고서만 보고 판단을 하고 중요한 사건들마저도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처럼 또 현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심이 정책법원이다, 법리를 심사한다라는 명분으로, 참 표현하기도 민망한데 어쨌든 기록도 안 읽고서 처리해 버리는 이런 관행들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재판관들이 수사기록이든 소장이든 어떤 1·2심의 재판기록을 읽고서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인원은 확보가 되어야 읽기라도 할 텐데 지금 1인당 3000건이 넘는 사건을 1년에 처리하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등법원 상고부입니다? 상고부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거의 끝났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논의되다가 그 논의가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고 또 국민들이 3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3심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잘못됐다, 상고하지 마라, 뭐 쓸데없이 이렇게 남발하느냐라고 국민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증원을 하고 또 그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인적 구조는 최소한도로 맞춰 줘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재판관의 그 보고서만 보고 재판하는 관행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상고심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야 될 것인지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접수돼 있고 그 다음에 법률심이라는 속성도 있고 상고허가제가 시행됐다가 폐지된 측면도 있고 아울러서 심리불속행제도가 운영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개편을 해야 된다는 논의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처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30명 증원안이 대법원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그 결과에 따라서 30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논의에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나온 30명 증원안이 지금과 같은 대법원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부만을 많이 늘리고 그와 같이 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명으로 또는 100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했을 경우에 상고심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없이 일단은 인원수만 나와 있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좀 더 상고심 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충실히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로서 대법관 수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박균택 위원 소부는 소부대로 여러 개로 쪼개서 일반적인 사건들을 심리를 하게 하고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 사건, 전원합의체를 거칠 만한 사건들은 30명의 전합체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민사 전합체와 형사 전합체로 반반씩 나눠서 진행을 하든 이것은 운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대법원이 의견을 줘서 한번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것이 모든 조직은 조직을 키우고 싶어하고 증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고 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조직을 비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외부에서 비판할 정도로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법원만은 소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게 대법관들의 권위 유지용은 아닌 것인지, 혹시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헌법재판관들보다 어떤 희소성이라고 그럴까요, 위치·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기적인 또는 자기 보호적

인 이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동안 대법원의 구성과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주된 입장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현재와의 관계 등을 고려를 했었을 때, 우리 헌법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대법원의 모습을 상정했었을 때 현재와 같은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대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최고법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선 논의도 있었지만 충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까지 이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국민 삶과 너무나 직결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신중해야 하고 또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대법관의 증원 숫자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과 예산이 늘어나는 법원행정처도 다 들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신중하자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 논의기구의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시기를 보면 우리가 이번 국회 들어서 지금 1년 정도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전혀 여기에 관련된 논의가 없다가 저번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사건이 나고 나서 갑자기 숫자만 규정한 한 조문을 바꾸는 법률안만 제출이 된 것이고요. 기존에 이런 사법개혁의 큰 틀을 바꿀 때는 사법개혁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범정부적이고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했던 전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논의만으로 사법 체계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요.

결국은 국민이 편해지느냐, 국민에게 좋아지는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인데 첫 번째 정치적 중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법부는 원래 기존에 대법관들이 해 온 판결들, 대법원 판례들의 기록을 받아 가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서서히 판례들이 상황에 맞게 변경해 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돼 버리면 30명으로 증원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대통령이 16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또다시 차기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의 대법관들을 한 번에 바꿔서 결국은 대법관들의 숫자와 어떤 판결 성향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기존에 이런 논의를 할 때도 과연 전원합의체를 2개를 운영할 거냐, 30명으로 전원합의체 운영이 가능하냐 또 전원합의체 운영을 2개, 3개씩 했을 때 이게 복불복 재판이 되면서 일관된 판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특히 정치 성향이 있는 사건들도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서 판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전원합의체의 누가 임명한 대법관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요.

또 아까 우리나라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민생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대법관만 대거 늘리는 것에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 차장님, 예산 부분 관련해서 보통 대법관이 새로 임명되게 되면 4급 상당의 비서관은 같이 임명되는 구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차량이나 경호 문제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의견과 경호 문제가 따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법관들도 배속이 되어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비서관 외에 별도의 경호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님들에 한해서는요.

○주진우 위원 차량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차량은 제공되고요.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봉뿐만 아니라 차량 또 비서관 그리고 사무공간 이런 것들의 예산으로 연간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갈 텐데, 보니까 현재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 조차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기존에 추계했던 것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인용에 보면 차량이나 사무실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대법원의 공간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인력과 공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16명을 증원하는 30명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법관을 16명 증원하게 되면 순수 보조인력, 즉 비서관과 재판부 참여 인력만 하더라도 한 140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지금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포함 열네 분의 대법관을 전제로 했었을 때 대법관들 외에도 재판연구관으로 법관이 100명 그다음에 비법관이 한 20~30명 되는 보조인력들이 있게 되는데요. 대법관 수를 이와 같이 증원을 하게 되면 그 보조인력을 또 어떻게 증원을 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도 지금 상황으로도 포화도를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건물을 신축한 지가 올해 3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건물 포화도가 상당히 있게 되는데 현재 규모보다 2배로 큰 대법원의 규모로 된다고 한다면 현재 건물에서는 소화할 수가 없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추산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주진우 위원 마무리로,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런 논의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또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금 취임 첫날에 간단히 논의해서 통과시킬 법안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추가로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윤 위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성윤 위원 18대 국회 보고서를 보니까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와 같은 취지로 반대를 하셨나요? 대법관 증원 개정안이 지금 처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때마다 똑같은 의견을 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증원하는 규모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이성윤 위원 아니,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법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하셨나요?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나요? 다 신중 아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신중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이성윤 위원 신중 의견이고, 대법관 증원은 상고허가제나 심사제, 고법 상고부 설치 이런 것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때도 동일한 논거였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의 심급구조, 그러니까 현재 상고심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의 논의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윤 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18대에도 했는데 지금 22대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고.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에 보면 대법원에 1년에 접수되는 사건이 2014~2023년 쭉 봐 보면 평균 한 4만 건 되거든요. 대법원의 장기 미제, 1년·2년·3년·5년 미제 쭉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 통계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일선 법원에는 장기 미제라는 개념을 뒤서 1년 6개월 초과를 하거나 2년 도과된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를 하는데요 대법원은 따로 그러한 분류 기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 위원 대법원이기 때문에 안 두겠지요. 그런데 대법원으로 한 번 사건이 가면 허송세월이라는 국민들의 말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간 한번 보십시오. 몇 년은 기본이잖아요. 제 친구 아는 분이 단순 사기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 간 지 7년인가 9년 만에 결론이 났어요. 잊어버릴 만하면 통지가 와 가지고 그때 사건을 재판했다는 거거든요.

대법원이 왜 이렇게 사건이 늦는지, 대법원이 과연 이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지, 대법원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간 사오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록을 다 봤다 또는 기록을 읽었다, 국민들은 과연 지금 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대법관님들이 자기 기록을…… 그렇게 억울해 가지고, 1심·2심 거친 것을 대법원까지 보냈다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대법관님들이 다꼼꼼히 읽으시고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록을 읽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대법관들이 봤던 기록, 로그 기록 그것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이틀 만에 100만 명이 공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은 대법원에 간 내 재판, 내 사건을 도대체 우리 대법관님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얼마나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 줬는가 그게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넘긴 후 9일 만에 바로 선고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대법원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사건이, 97년에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인혁당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기록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두꺼운 기록입니다. 사오천 페이지 되는데 전원합의체

심리하고 그날 선고해 가지고 그다음 날 새벽에 8명을 사형을 집행해 버렸잖아요. 8명을 사형을 집행하면서 하루 심리하고 하루 만에 끝내 버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이고, 이렇게 사오만 건의 사건을 평균 내 보면 가동 법관을 열두 분으로 잡더라도 한 분이 사오천 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10건씩 선고를 한다는 것인데 제대로 심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법원이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인지……

전원합의체든 대법원 소부의 합의 과정이든 대개 국민들은 모르고 약간 비밀에 싸여 있잖아요, 비공개하니까.

그런데 2016년도인가요, 박시환 전 대법관이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논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읽어 보고 ‘참, 이것 국민들이 알면 대법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보더라도 보통 선고를 하려면 2주 전에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빼더라도 적어도 삼사십 건의 사건은 합의가 된 것 아니냐.

그러면 통상 대법원에서 재판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사건 재판관들 네 분께서 전원 기록을 다 읽고 치열하게 토론해 가지고 이것은 맞다 안 맞다 그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논문을 읽어 보면 전원합의체만 본다면 저는 재판연구관이 다 재판하는 느낌이다 또는 주심재판관 의견이 다 관철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적어도 박시환 재판관이 썼던 ‘실제 모습과 문제점’ 한번 보십시오.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몇 건씩 그냥 합의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이번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대법원 재판의 문제점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왜 대법원이 이렇게 내 사건은,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야 대법원이 내 사건을 정확하게 대법관님들이 기록을 읽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죄송한 말씀 같지만 졸속으로 재판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분통 터진다 또 대법원을 반드시 개혁해 달라 그런 말씀을 여러 분이 많이 하셨어요.

더군다나 여기 연구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대법관님들이 특정 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이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다 양심이 있고 법조적 양심에 따라 하지만, 이것 보십시오. 이런 구성하에서 어떻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대법원 사건을 보면서 과연 대법원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관 증원 요구가 있었는데 꼭 말씀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대법원 전체 개혁과 함께 맞물려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뭘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상고법원 설치하려다가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안 된 것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1인당 하루에 10건 이상씩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요. 저도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말 들어 보면 대법원 사건은 정말 치밀하게 사건을 고민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런데 이렇게 사오천 건을 한 분이 담당한다는 말 듣고 국민들이 매우 놀라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도 이제는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해 줘야 됩니다. 대법원 사건으로 올라가면, 그 재판을 한번 받아 보시면 피고인의 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 한번 받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기일이 잡히든 6개월에 잡히든 간에 1년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에 온 사건으로 몇 년간 가 보십시오. 그 불안에…… 다른 것, 정역 사는 것, 오히려 형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재판받는 사람들, 피고인들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렇다면 재판을 빨리 처리하는 것은…… 대법원이 신뢰를 받는 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증원하더라도 대법관님들이 국민 편에서 재판을 정확하게 잘 진상을 가려서 정의에 맞게 옳게 판단해 주면 오히려 증원해서 대법원이 더 신뢰를 받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수십 년째 똑같이 ‘신중 검토’, ‘신중 검토’ 얘기하니까 이제는 한계에 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법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저 발언 더 해야 돼요.

(박범계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과 사회교대)

○소위원장대리 유상범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동혁 위원 계속 반복되는데 대법원 사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행정처도 대법원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필요하다면 증원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장동혁 위원 다만 아까 재판 졸속하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입법을 졸속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사건 하나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바꾸는데 이것을 졸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취임식 첫날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가.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본인은 이미 재판 중지시켜 놨는데 그러면 관련자들 관련 사건, 대북송금, 대장동 관련자들까지 다 무죄 만들어 주려고, 그 사람들은 재판 중지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까지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할 게…… 당연히 비판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계속 그 주장을 할 거고요. 왜 취임 첫날부터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이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청사 문제도 있다 그랬고 예산 문제도 있다 그랬고 인력의 문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0명으로 늘린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몇 명씩 늘릴 것인지, 늘린다면 몇 명이 적정한지, 늘리고 나서 재판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고 행정처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반대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그렇게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동의한다니까요. 필요하면 중원해야 된다, 동의한다니까요.

20명으로 중원하는 것과 30명으로 중원하는 게 똑같습니까? 지난번에 논의됐던 것은 20명 중원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왜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신중하게 공청회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소위원장대리 유상범**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대법관 중원이 사법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한 1년 4개월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사개특위에서 대법관 중원에 대해서……

바읍시다.

(유상범 위원, 박범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박범계** 말씀 다 하시고……

○**유상범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18대 사법개혁특위에서 1년 4개월간 논의할 때의 상황, 지금의 상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즉 그 당시에도 대법관들의 과중한 사건 부담의 문제가 이슈가 됐고 또 한 그로 인한 사건 처리의 지연 이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상 상고허가제로 운영되는 심리불속행의 문제, 즉 대법원 상고까지 했는데 대법관들이 내 사건을 직접 판단도 안 하고 판단받을 기회를 박탈하다라는 불만, 그래서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특위에서 사실은 그때 20명 중원을 하고 전원합의체를 1합의체·2합의체 형태로 나눠서, 아마 민사법 또 공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시행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법시스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조인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인정받을 때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제도를 중원할 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법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 또 청사의 문제, 적어도 이런 것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처럼 느닷없이 사람만 두 배 이상, 30명으로 늘리는 형태 이것은 결국 대법원을 개혁한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 개혁을 빌미로 해서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8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추가적 논의가 더 있는지 또 말씀대로 대법원 운영을 이와 같이 할 것인지—18대에 논의된 대로—등 여러 가지를 추가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저는 우리가 필요한 제도개선은 이루어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는 첫날 소위 대법관 중원이라는, 통합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사법부 시스템의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법안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가 논의 없이 또 추가 공청회와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없이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졸속 입법의 비판 이상의 큰 문제를 야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위해서 추가 공청회든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숙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더 토론하실 분 없으신가요?

○**장동혁 위원** 저 마지막 마무리……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 민주당 측의 두 분은 말씀 안 하셨는데……

○**박희승 위원** 예, 저……

○**소위원장 박범계**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무엇보다 오늘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나라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렇지 않았든 간에 오늘만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취임을 함께 축하하고 우리의 공동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날에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법안 처리는 자칫 통합보다는 분열 또 숙의보다는 속도, 품격보다는 절차 무시로 읽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위원** 저도 30초만 할게요.

○**소위원장 박범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사실 법원은 상고심 개편에 대해서 큰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 언급하기도 싫고, 그 중심에서 수차례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저는 법원이 상고심 개편을 추진하다 사법농단이라는 법원 역사상 가장 힘든 사건을 겪었고 힘든 시간을 거쳤고 그로 인해서 법원이 많은 좋은 판사들을 법원에서 내보내야만 했고, 그래서 지금도 사법부는 어떻게든 상고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질 높은 상고심 재판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편이야말로 어쩌면 지금 사법부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의 상고심 제도 개편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법부 상고심 개편이라면 제가 먼저 나서서 추진하고 동의하고 제가 앞서서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법안만큼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김용민 안, 장경태 안 부칙이 내용이 동일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부칙안이 다른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살펴볼 수 없게 돼 있

어.

○전문위원 김성완 이건 저희가 좀 잘못한 거고요. 앞에 2페이지 왼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뒤쪽은 저희가 붙이기를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 마무리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주진우 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너무 많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규모를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것인데, 두 배 이상이지요, 14명에서 30명이니까. 이게 전체적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고등법원 판사의 증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병목현상처럼, 이렇게 되면 사건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은 인력을 배분하는 것인데 대법원만 비대해지고 고등법원 그대로 놔두면 또 고등법원이나 1심 법원에서의 병목현상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 하필 대법관 숫자가 30명이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사건 감소 추세랑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몇 개로 운영할 거냐 또 소부는 그에 따라서 몇 개가 되는 것이며 또 공판하고 인력 증원 문제는, 도대체 재판연구관을 몇 명을 늘려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부 다 현재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서는 너무 논의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실증적인 통계를 기초로 해서 추산을 했을 때 뭔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기준 대법관 14명 체제에 대해서 뭔가 개별적인 불신을 가지고 그 이상의 숫자를 새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인 숫자와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저는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질문을 좀 할게요.

제가 구하라법 하는 동안 어느 분이 54년 만에, 동생이 선원이었는데 배를 타다가, 한 살 때 아이들을 버리고 간 어머니가…… 54살에 선원이 배를 타다 사망을 했어요. 배에서 실종이 돼서 선원을 찾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놓고 간 재산을 54년 만에 한 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다 갖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같이 살던 누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있던 누이가 그것을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구하라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하라법은 막 통과가 되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든 법원에서도 반대하고 다 안 되고 그런 사이에 그 누이가 엄마는 한 살 때 버리고 간 엄마라서 엄마가 동생이 죽어 간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고 상고심을 낸 게 갑자기 기각됐다고 날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이 돼서 날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너무했다. 한 살 때…… 대법원이 너무했고, 구하라법이 몇 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현법재판소가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법을 바꿨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법원에서 그냥 기각시켜 버리는 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태완이법도 그랬습니다.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안 대법원에 태완이법을 다시 한번 수사하게 해 달라고 우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1심, 2심에서 다 기각시키고 3심에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없애 버린 거지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태완이법도 그다음에 바뀌었고 구하라법도 그다음에 바뀌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제가 좀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 대법관은 하늘 위에 저 높이, 대법관이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난다. 대법관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살려 주고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법관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혹 날려 버린다는 거지요. 그 사례가 구하라법의 사례였고 태완이법의 사례였고 다른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대법관 너무해’ 이런 얘기를 같이하는 게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 얘기는?

심리불속행으로 매년 처리되는 게 몇 %나 되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한 60~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본 통계로는 72.3%예요. 10건이면 3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3심에서 봐줬으면 하는 게 태완이법도 그랬고 구하라법도 그랬는데, 그래서 대법관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이 있지요.

개혁안을 내놓을 때 언제였습니까? 2022년 법원행정처가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를 하면서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을 내놓으신 적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 당시에는 4명 증원이지만 상고심사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4명 증원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4명 증원하고 상고심사제를 병행하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고법원 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너무 오래 걸리고, 대법원에서 한 사람이 맡는 사건 건수가 제가 본 것은 1년에 3139건 이렇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3000건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1인당 보통 평균 연간 3000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또 70%는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날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70% 빼고 3000건이라는 얘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체 사건 수가 3000건입니다. 그중에 70%는……

○서영교 위원 3000건이고 그중에 70%는 그냥 날려 버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떻든 빠르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게 과제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어떻든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1년 동안 몇 번이나 열립니까?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해서 어떻든 과기환송시키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그런 과기환송이 있었다 이게 현실이었고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전원합의체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10건 전후 되고 또 연도별로 사건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서영교 위원 보통 얼마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10건에서 2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건인데이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서영교 위원 4만 건 중에……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3만에서 4만 건 정도로 보시면……

○서영교 위원 4만 건 중에 10건이면 몇 프로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원합의체가 많아지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전원합의체는 아주 중요한 것 일 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처럼 10건 내지 한 0.2% 정도라고 저는 봤어요.

제가 법사위 하면서 끝내 과제는 대법관을 늘리거나 아니면 상고심제도를 달라거나 이런 게 법원의 요구였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으면 안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의했던 것을 가져오고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대법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있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아까 말처럼 그렇게만 정리하실 게 아니라 이번이 기회잖아요. 기회인데, 그래서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대법관이 더 늘어나면…… 위원장님 저의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높은 사람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차관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요? 독일은 어떤가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이원화돼 있어서요. 재판장을 담당하는 최고의 법관과 일반 법관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헌법상으로도 대법원에 일반 법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60년대 일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독일 같은 경우에 몇 명입니까,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그런 의미로 따져 보면 독일에서의 대법원이라는 구조 자체도 연방일반법원, 연방노동법원 이렇게 다 세분화가 돼 있고, 그걸 다 합쳐 보면 한 200~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방일반법원에도 보통 한 100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100명이 좀 차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합에 참여할 수 있는 대법관이 100명이 있지는 않고요. 이원화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원화돼 있고 차등화돼 있지만 전합은 하지 않지만 3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그건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3심 역할을 해서 빠르게 판단해 주는 대법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리는 게 확당무게한 일은 전혀 아니기는 한 거잖아요. 빠르게 하고, 지금 말씀처럼 이원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대법관을 늘리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대법관을 아주 높은 자리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아닌 빠른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전원합의체 이런 것들이…… 또 지금 1년에 4만 건 중에 10건 정도가 전원합의체인데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논의가 충분히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차장님 말씀 참고해서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참고해서 여쭤봅니다.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지금 대법관의 숫자가 대법원장 포함해서 열네 분이고요. 현재 대법원의 운영체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87년 헌법 이전부터도 대법원의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가 돼 왔고, 그전에 상고허가제와 심리불속행제 이러한 제도들이 있고 없어지고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왔었는데 앞으로 30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사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의 취지는 대법원 현재 구성과 다른 형태로 어떻게 민사 하는 재판부랄지 형사 하는 재판부로 분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이러한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대법관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구조가 좀 바뀐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가 틀이라는 말은 종종 정치적으로 프레임 이런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법관의 수라든지 자격에 관해서는 헌법사항이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 면에서 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1980년에 소위 신군부가 국가보위비상입법기구를 만들면서 그전까지 있었던 소위 헌법상의 틀로 여겨졌던 대법관의 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년이 됐고 대법관 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은 그 오래 묵은 일종의 관행 아닌 관행 그런 것들이 사법부 틀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상고심 구조 개편이 전제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도 상고심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죽 논의돼 온 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영교 위원님이 아까 마지막에 잘 지적했듯이 대법관 수 증원 문제가 완전히 고도로 성역화돼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과거에 4명 증원안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관 증원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소위 상고심 구조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소위 상고심사제라든지 상고법원제라든지 또는 고등 상고부 제도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예하적으로 논의되었던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의 대법관을 늘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급심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하급심 충실화는 대법관 수의 증원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이슈이지 대법관 수를 늘림

으로써 하급심이 충실향돼야 된다라는 명제에 이르는 건 아니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들어나는 대법관 수만큼이 하급심에서 충원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충원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하급심은 충실향할 필요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닙니다. 하급심 충실향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절대명제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법원이 하급심 충실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론 없이 법관 수의 증원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 왔다, 그런 면에서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가 하급심 충실향과 일맥상통하는 연관 과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부 위주의 재판으로 흐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과거 소위 김명수 코트로 대변되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 이전으로 놓고 보면 소부 중심의 재판을 대법원이 사실상 해 왔고 대법원이 예규를 고치면서 전합체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강조됐지요.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합이 좀 더 활성화된 건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맞습니다. 그 얘기는 대법원 재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적인 요구들이 많은데 그것은 딱 단순한,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그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은 억제를 시키든지, 즉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상고심사제를 포함한 소위 상고를 억제시키는, 심리불속행제도도 사실은 상고심사제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억제를 하든지 아니면 대법관 수를 증원해서 그 수요에 어느 정도 충당하든지 이 둘 중의 하나일 뿐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실은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오랜 논의가 이미 18·19·20대, 심지어 지난 21대까지 사법개혁특위가 가동이 됐습니다. 맞지요? 이 사법개혁특위가 왜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소위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제 기억으로는 세 번쯤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은 확실하게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이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사법개혁특위라는 명칭을 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개혁특위였습니다.

지난번 2019년에 소위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된 것은 공수처법, 검찰의 소위 기소 독점·편의 주의에 대한 예외로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강조가 됐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 충분히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18·19·20대, 21대 지난 국회까지 소위 법원 개혁, 사법부 개혁의 문제는 꾸준히 논의됐고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법관 증원의 문제, 심지어 독일식 대법원 시스템에 대한 도입 논의까지도 제 뇌리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부 위주의 재판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제가 잘못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전합체를 형해화한다고 하는 건데 오늘 이 결론을 냈에 있어서 제 근본적인 어떤 관심사는 전합체와 소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법안이 이러한 고민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법안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소부와 소위 전합체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거냐라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력과 공간의 문제는 제가 오늘 위원님들, 사전 회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법사위에서 매해 예산심사를 하는데 500만 원 예산짜리에도 꼴이 틀립니다, 우리끼리. 법사위 위원님들의 특질이자 장점이자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500만 원 가지고도 꼴 틀릴 정도로 사납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500억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방에 하루종일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교량과 도로가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법사위에서 인력과 공간의 문제를 대법관 중원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고와 토론, 공론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8대, 19대, 20대, 21대…… 제가 소위 국회의원하면서 언제나 관심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언제나 대법관 중원이라는 본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저 자신도 그런 범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언제나 법원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위 상고법원제를 들고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부화뇌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시겠지만 윤석열 검사에 의한 소위 사법파동과 같은 그런 사법권 남용에 대한 정말 전대미문의 수사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숙고하지 못했다, 공청회를 더 열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는 충분히 숙고했지만 결과적으로 부화뇌동했고 근본적으로 대법원을,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국민의 수요, 욕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측면이 훨씬 더 큰 데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소위 숙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과 상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법원이 화석화되어 간다는 느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제가 차장님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차장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법령 해석의 통일이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대법원의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지난 대법원 전합체가 선거를 불과 열흘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하급심 재판이 돌아가는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단 한 줄이라도 언급이 있었는지,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법원이 그러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원장의 의견이고요.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 계세요.

지금 현재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법안은 16명을 현재 14명에서 늘리는데 그중에 반반씩 나눠 가지고 1년을 유예하되 유예한 그 후로 여덟 분 그다음에 여덟 분 이렇게 중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법원조직법이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전합체와 소부의 관계, 저는 30명 안을 찬성합니다. 100명 안과 30명 안이 있는데 30명 안을 한다면, 현재 3명 이상의 소부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현재 4명씩 3개의 소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3명 이상, 뭐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법원조직법의 문언을 놓고 보면 이것이 전합체 우선주의다 또는 소부 우선주의다. 분명한 것은 ‘먼저’라는 표현을 단서 조항에 쓰고 있습니다. 맞지요? 소부의 ‘먼저’라는 표현. 차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기억을 믿으십시오. ‘먼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원조직법은 소부 우선주의, 소부 선 배당주의, 후 전합체 의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예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소위 항후 30명 안을 채택하는 경우에 소부가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에 전합체와 소부의 관계,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숙성돼서 법안에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들어 보더라도 우리가 이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고 사개특위에서 논의했지만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에 대해서 몇 명으로 늘릴 건지, 늘렸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결국은 없었다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중요하고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다가 급해지면 그건 우리가 여기서, 법사위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는 통과시켜 놓고 나면 유예기간 중에 법원이 알아서, 기재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왜 그것까지 논의해야 될 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것을 듣더라도 아까 주진우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도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충분히 숙고했다, 어떤 내용을 숙고했고 그 숙고의 결과 어떤 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숙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증원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대법관 증원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수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판제도에서 신속성과 공정성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이는 곧바로 3심 재판받을 권리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대법원이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심급이 많을수록 사건 수임 기회가 늘어나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나 소송 당사자에게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사건을 확정시킬 것인가는 단순한 제도적·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이라든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공정하고 올바른 결론이 나오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도 유죄됐다가 무죄됐다 또 유죄됐다 뭐 이런 게 단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어느 결론이 옳으냐? 그러면 4심, 5심 계속 가면 모든 사

람이 공감하는 결론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여기 증원 법안이지만 오히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지금 우리는 대법관 열네 분만 말씀하시지만 정말 법원에서 일 잘하는 재판연구관, 법원의 허리격인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지금 재판연구관으로, 판사인데 지금 재판연구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월급 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처 차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독일도 지금 대법관이 많다는데 서로 직위나 신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재판연구관은 뭡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관님들의 보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 사람들 판사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판사이기는 합니다.

○박희승 위원 사표 내고 왔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 사람들도 지금 법조 경력이 보통……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13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사실상 사건을 심리한다면 승복도도 높은 사건 처리 능력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합하면 지금 대법관이 몇 명 입니까? 114명 있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라고 쳐도. 우리가 독일보다 지금 적게 있습니까, 법관이?

이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차장님, 장동혁 위원님이 제 질문을 지금 곡해해 가지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18·19·20·21대 사법개혁특위가 가동됐다,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 적어도 둘 내지 셋은 제가 위원으로 소속해 있었다. 2003년 대법원에 사법개혁특위를 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 간사였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한 지가 벌써 햇수로만 따지면 십몇 년은 될 거예요.

이게 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논의는 충분히 했지만 그동안 소위 상고법원제니 또는 고등 상고부제니 이런 등등이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되면서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애써 외면했던 것이지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숙고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법안에 논의를 다 담아서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에 논의를, 그동안에 숙고의 차원에서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장동혁 위원 숙고한 내용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숫자만 그냥 덜렁……

○소위원장 박범계 장동혁 위원님도 이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실 명분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22대 국회에서 논의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박군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질의 끝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자꾸 우리가 ‘숙고’라는 단어를 많이 꺼내는데 이 법안이 발의되고 지금 소위가 열리는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제1팀에 소속되어서 논의를 하다가 그때도 서로 기관 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이 주제가 묻혀 버리고 지나간 적 있는데……

오늘 반대하는 논리나 찬성하는 논리나 20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20년째 생각하고 다뤄 왔던 주제라고 한다면 더 이상 숙고할 내용이 뭐가 있다는 것인지, 이대로 논의를 몇 달 더 연기하고 몇 년 연기한다고 해서 오늘 양쪽에서 제기하는 논리, 이유보다 더 새롭게 제기될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실상……

○**장동혁 위원** 숙고된 내용이 적어도 법안에 반영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명 늘린다는 이야기만 있고? 더군다나……

○**유상범 위원** 아니, 그전의 국회의원들이 18대하고 19대, 20대 하셨던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의원이 다르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자, 끝내는 게 아니고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범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용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을 30명으로 증원하되 그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 매해 4명씩 4년 동안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유상범 위원**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시가 가능합니까? 앉아서 회의하고 나서 느닷없이 대안 제시를 위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갑자기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대안 제시를 했으면……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심사를 하십시오, 기회를 줄 테니까.

○**장동혁 위원** 표결하려고 그냥 대충 대안 제시하신 건데 논의해서 뭐……

○**소위원장 박범계** 중얼거리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얘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이를 통합 조정한……

언제 나갔어?

○**장동혁 위원** 의결해요.

○**유상범 위원** 의결해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유상범 위원 참 나…… 아니, 반대하시던 분들이 나가서 10분 정회한다 하더니 1시간 정회를 하고 오셔 가지고 지금……

○주진우 위원 저도 발언 하나 하고 그러면……

○유상범 위원 우리 발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박범계 예, 발언하십시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유상범 위원 하세요.

○주진우 위원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한 바로는 민주당 위원님들조차도 이 법안은 아직 논의할 대상이 좀 많아서 신중히 더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잠시 정회하고 와 가지고 갑자기 위원장님 발로 이렇게 대안이라고 해서 안을 낸 다음에 추가 논의도 없이 그냥 통과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입법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유예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논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만약에 실제 이게 논의가 숙성돼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예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일단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거기다가 부칙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사이에 또 다른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숫자부터가 너무 안 맞아요. 무슨 근거로, 기간만 유예하지 30명으로 나온 통계 숫자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여기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과 1시간 정도 논의했는데 사건 통계가 됐든 숫자 추이가 됐든 대법원의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 예산을 들여서 국민 혈세로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적정한지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4명에서 단순히 감으로 그냥 대충 잡아서 30명 또 어떤 안은 100명이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논의 틀이 너무 잘못됐고요. 이렇게 하면 저는 국민들이 이 법안 논의 자체에 대해서 납득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첫째, 100명 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기간에 선대위에서 철회하기로 대국민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상정시킨다는 모습,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의도로 이 법안을 가져왔는지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인은 안하고 30인 안을 한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한 생색내기용 법안인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철회한다고 약속해 놓고 이 법안을 어떻게 여기다 올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건 하도 빨리 지나가서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1년 유예하되 1년에 8명인 걸 나눠서 1년에 4명, 4명 해서 16명을 하겠다 아마 이렇게 가시는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에누리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건처럼 분할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30명인지 20명인지…… 적어도 18대에서 20명으로 논의됐으면, 합의까지 됐다면 우리

가 20명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그러면 10명을 왜 늘려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요. 과거에 논의했다? 과거의 논의에 참여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철학이 바뀌었는데 그냥 30명을 채워야 된다는 강박증에 이걸 이런 식으로 1년 8명이 1년 4명으로 바뀌고…… 법을, 어떻게 이렇게 사법제도를 만들습니까? 다 판사도 하셨고 여기 다들 법조인이신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모르지 않을 텐데……

반대하시던 박희승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대법관이 는다는 게 대법관만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법원 부장부터 많은 변화가 바로 다 이어 오잖아요. 소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몇 명으로 할지 이런 논의도 안 하고 30명부터 늘리는 겁니까? 그러면 논의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법안 보완해 줄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논의를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선고된 다음 날인 5월 2일 날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처음 법안을 여기다 올려놓고 민주당 위원 두 분이 반대하니 가서 밀실에서 막 논의해 가지고 1년 8명이 아니라 1년 4명씩 4년으로 늘리자, 이런 법안을 가지고 와서 대안이라고 하면서 표결하자. 지금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5년 내내 이러실 거예요?

표결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지요.

○주진우 위원 법리적인 지적 하나만 남기고 싶은데요.

1년에 4명씩 4년간 증원을 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후년에는 4명이 늘어서 대법관이 18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2명이 되고 26명이 되고 30명이 되는데 그때마다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전원합의체부터 소부 구성을 전부 다 바꿀 겁니까? 이것은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보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를 4년으로 늘린 모양인데요. 이 큰 혼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무슨 논의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2년 차에 8명 늘어났을 때까지는 그냥 기존 체제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하나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26명으로 늘어나면 그때는 또 전원합의체를 나눌 겁니까? 이게 지금……

그사이에 또 사건 추이가 더 줄어들면, 사건 추이 숫자는 더 줄어드는데 대법관 숫자는 반대로 더 늘릴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법안 자체 설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즉석 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가 지금 여기서 한두 마디 돌아가면서 얘기한다고 논의를 끝낼 수 있는 수준의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 꼭 남겨 놓고 싶습니다.

○장동혁 위원 거부권도 없는데 민주당이 왜 이러시지요? 논의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이라도 갖추고……

○소위원장 박범계 발언 허가를 받고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장동혁 위원 발언 기회 안 주시면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듣고 가세요.

특히 주진우 위원님 그 발언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이나 주진우 위원님이 소위 대법

관과 연동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법관 한 분당 사실심이 무슨 전 속되어 있는, 그게 검사적 발상입니다. 우리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가……

○주진우 위원 그게 검사 발상이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들어 보세요. 본인도……

○주진우 위원 그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이지요. 제가 직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꼭 남겨 놓고자 하는 법리니까 저도 남겨 놓고자 하는 법리입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4명씩 해 가지고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좀 가만히 있어 봐요. 먼저 들어 보세요, 나중에 또 반박하든지. 또 전체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대법관 한 사람당 무슨 사실심이, 어떻게 지휘 체계에 따라 가지고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심이 전속적으로 연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주진우 위원 중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냥 단순 계량적으로 현재 열네 분의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들이 지금 1년에 4만 건 가까이 들어오는 건수를 n분의 1로 맡아 가지고 소부에서 처리하거나 중대한 법리적 통일성이 필요한 또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합체를 열어서 합니다. 말 그대로 삼십 분의 대법관이 일순간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삼십 분의 대법관이 전합체를 못 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네 분씩 1년에 늘어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또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소위 완비되지 않은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다 정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민주당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수십 년 동안 대법관 증원의 문제를 수요자 국민 관점에서 얘기를 해 왔지만 그동안 이런 평계 저런 평계를 대 가지고 대법원이 끝까지 반대를 한 것이 대법관 증원의 문제였다. 본질적인 사법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귀 기울이거나 누가 무게 있게 그것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소위 사법개혁의 문제 중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법관 수가 지금 열네 분에서 30명으로 한꺼번에 늘어난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되지요? 왜 그것을 사실심하고 연결하지요? 오히려 지금 대법관 한 분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진우 위원 제가 사실심과 연계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개특위에서…… 사개특위에 여러 번 참여해 보셨지 않습니까?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한 챕터 가지고도 엄청나게 오래 논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안의 패키지로 논의해서, 다 같이 가져와서 논의를 하든지. 그런데 대법관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 안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민주당 위원님 중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국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30명을 늘리는 것이 그냥 감으로 대충 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적어도 기록은 읽고 재판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자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10배쯤은 돼야 정상인데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생기는 부작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현재보다 약 2배 규모로 늘리고자 하는 의도로 30명 제안하는 법안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대충 숫자를 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해마다 4명씩 늘어나면 뭐가 복잡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선 법관들이 해마다 증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일선 재판에 뭔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대법원만 증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4명씩 늘어나면 하나의 소부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지고 딱 알맞은 숫자의 증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4명씩 늘어날 때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30명이 됐었을 때 전원합의체를 한꺼번에 운영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나중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로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관한 문제 또 해마다 4명씩 늘리는 것의 이 문제가 도대체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주제는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숙고하자는 그 요청과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논의가 돼 왔던 주제이고 그때 상호 간에 제기했던 주장에서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만 남은 사안 아니냐, 뭘 더 숙고하고 뭘 더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가. 아마 새로 공청회를 하든 뭐 하든 지금까지 20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그 주장 외에 더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인가 때문에 이제 뭐가 합리적인 것인지 판단의 문제만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코 출속적인 처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국힘 위원들께서 30명의 근거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2018년도 기사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대한변협에서 전국 변호사 2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2000명이 뭐라고 했냐? 대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찬성 이유로는 대법관이 증원된다면 대법원 재판의 심리가 보다 충실히 질 수 있다. 사건 수 대비 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에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 순으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증원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물어봤더니 무려 36%가 24인 이상이 필요하다. 또 25%가 15~17인 이상, 20인 이하는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의 일이거든요. 이때는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3만 건 정도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지금 거의 8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30명은 일선에서 일을 하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찬성하는 숫자다, 합리적인 숫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더 토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아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차관, 배형원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근택 박범계 박희승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